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수원여자대학교

목 차

영역			항목명	페이지
학과 평가 영역	학과지원	1-1	취업률	4
		1-2	신입생충원율	5
		1-3	재학생충원율	6
		1-4	학생역량강화	7
	교육활동	2-1	학생교육지도	8
		2-2	학생지도	9
		2-3	교원개인별 강의평가	10
		2-4	기타수업운영(야간, 주말 수업 운영 등)	11
개인 평가 영역	산관학활동	2-5	산학협력체결, 실습지도(시수 미인정)	12
		2-6	산학협력교육과정 유치(계약학과 등 기타 신입생 유치)	13
		2-7	캡스톤디자인(정규교과목개설), 산학공동 프로젝트(비정규), 현장실습 운영	14
		2-8	창업지도 및 산업자문, 기술이전	15
		2-9	재정적 기여	16
		2-10	대내외보고서, 산학협력수주활동	17

영역		항목명		페이지
개인평가영역	연구활동	2-11	학술논문	18
		2-12	저서 및 사이버콘텐츠, 학습공동체(학습조직)	20
		2-13	특허	21
		2-14	대외수상	22
	봉사활동	2-15	위원회, TFT활동	23
		2-16	학과장	24
		2-17	봉사, 홍보, 언론 활동	25
		2-18	연구소장 및 위수탁기관장 활동	26
	가점	2-19	기타 실적관리	27

1-1	취업률

세칙

※ 정의

학과 졸업생의 대학이 지향하는 목표 취업률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한다.

※ 점수산출방법

1. 취업률 평가점수

가) 목표 대비 달성률 평가점수는 아래 평가등급에 준하여 산출한다.

등급	목표 대비 달성률	평가점수
1등급	95% 이상	100
2등급	85~94%	90
3등급	75~84%	80
4등급	65~74%	70
5등급	65% 미만	60

나) 최대 배점은 100점으로 한다.

2. 학과 절대취업률 평가점수 : (X% / 100%) X 50

가) 최대 배점은 50점으로 한다.

3. 전체 최대 배점은 150점으로 한다.

※ 기타

1. 취업자는 2년 전 졸업자(2월, 8월) 중 12월 31일 기준 정보공시 인정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목표 대비 달성률 평가는 학과 및 주관부서에서 설정한 기준(12월 31일)을 근거로 평가한다.
2. 대학 및 학과의 목표 취업률은 매년 총장이 정한다.
3. 정보공시자료는 대학 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 자료를 활용한다.
4. 소속변경 시 졸업생이 있는 경우 소속변경 전 학과의 달성률로 평가한다. <신설 2023. 12. 14.>
5. 신설학과의 경우 당해 연도 졸업자가 없으므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신설 2023. 12. 14.>

1-2 신입생충원율 [제목개정 2023. 12. 14.]

세칙

※ 정의

당해 연도 정원 내 모집인원 대비 실제 등록한 정원 내 입학자를 파악하여 신입생 충원수준을 평가한다.

※ 점수산출방법

1. 신입생충원율 평가점수 : (정원 내 입학자 / 정원 내 모집인원) X 100

가) 신입생충원율 점수는 아래 평가등급에 준하여 산출한다.

등급	신입생충원율	평가점수
1등급	100% 이상	50
2등급	97.5% 이상	40
3등급	95% 이상	30
4등급	92.5% 이상	20
5등급	90% 미만	10

나) 최대 배점은 50점으로 한다.

2. 추가모집인원 <삭제 2023. 12. 14.>

가) 최대 배점은 50점으로 한다.

3. 전체 최대 배점은 100점으로 한다.

※ 기타

1. 입학인원 수는 해당 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를 말한다.
2. 모집인원은 입학을 위해 공고되는 모집 요강에서 당해 학년도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3. 신입생충원율은 대학 정보공시자료로 평가하며,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신입생충원율의 평가기준은 40명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3	재학생충원율

세칙

※ 정의

정원 내·외 학생정원 대비 정원 내·외 재학생 수를 평가한다.

※ 점수산출방법

1. 재학생충원율 평가점수

가) 재학생충원율 점수는 아래 평가등급에 준하여 산출한다.

등급	재학생충원율	평가점수
1등급	96% 이상	100
2등급	94~96%	90
3등급	92~94%	80
4등급	90~92%	70
5등급	88~90%	60
6등급	88% 미만	50

나) 재학생충원율 평가점수 = [재학생 수(정원 내+외) / 정원(내+외) 주간 최초 입학자 수] X 100

다) 매년 4월 1일자 평가점수와 10월 1일자 평가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정한다.

2. 최대 배점은 100점으로 한다.

※ 기타

1. 재학생충원율은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4	학생역량강화

세칙

※ 정의

학생역량강화는 재학생 대상의 1)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2) 진로·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 3)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에 대한 정량적 실적을 평가한다.

※ 점수산출방법

1.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 (참여 학생 수 / 재학생 수) X 100 <개정 2023. 12. 14.>

가) 아래 평가등급에 준하여 산출하며, 사업별 각각 점수를 부여한다.

등급	참여율	배점
1등급	참여율 95% 이상	60
2등급	참여율 90~94%	50
3등급	참여율 85~89%	40
4등급	참여율 80~84%	30
5등급	참여율 75~79%	20

나) 최대 배점은 60점으로 한다.

2. 진로·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 = (참여 학생 수 / 재학생 수) X 100

가) 아래 평가등급에 준하여 산출하며, 사업별 각각 점수를 부여한다.

등급	참여율	배점
1등급	참여율 95% 이상	60
2등급	참여율 90~94%	50
3등급	참여율 85~89%	40
4등급	참여율 80~84%	30
5등급	참여율 75~79%	20

나) 최대 배점은 60점으로 한다.

3.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 (참여 학생 수 / 재학생 수) X 100

가) 아래 평가등급에 준하여 산출하며, 사업별 각각 점수를 부여한다.

등급	참여율	배점
1등급	참여율 95% 이상	60
2등급	참여율 90~94%	50
3등급	참여율 85~89%	40
4등급	참여율 80~84%	30
5등급	참여율 75~79%	20

나) 최대 배점은 60점으로 한다.

4. 학생역량강화의 최대 배점은 150점으로 한다.

※ 기타

1. 재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4월 1일, 10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2.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언어 및 수리 능력 등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학습법 워크숍, 보고서 작성법 특강, 학습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등)
3. 진로·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은 학생상담, 진로지도 및 상담, 교육프로그램(집단상담 프로그램, 대인관계향상 워크숍, 심리검사 등) <개정 2023. 12. 14.>
4.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재정적 지원,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자격증 강좌, 취·창업 특강, 모의면접 프로그램, 리더십 함양 워크숍, 이력서 교정 서비스 등)

2-1 학생교육지도

세칙

※ 정의

학생교육지도는 대학 주관부서에서 시행한 지도에 대하여 평가한다.

※ 점수산출방법

1. 자율설계 경력개발학기(코스)지도 <개정 2023. 12. 14.>

가) 산식 : 활동등급 점수 X 성과등급 점수

① 활동등급

활동내용	평가점수
창의연구코스 등 (국내·외현장연수 제외)	3
국내현장연수	2
국외현장연수	2

② 성과등급

성과등급	평가점수
1등급	20
2등급	15
3등급	10

* 단, 국내·외현장연수는 학생 연수 활동 위주로 진행되므로 성과 평가 시 1등급 대상에서 제외

나) 최대 배점은 60점으로 한다.

2. 학생교육지도

가) 학생교육지도(튜터링/멘토링, 학생학습조직, 수코칭 등)는 아래 평가등급에 준하여 산출한다.

나) 학생교육지도 = 사업성 평가등급 점수 X 달성도 평가등급 점수

① 사업성 평가등급

등급	평가점수
1등급	3
2등급	2
3등급	1

② 달성도 평가등급

등급	평가점수
1등급	20
2등급	15
3등급	10

다) 최대 배점은 60점으로 한다.

3. 학생교육지도의 최대 배점은 80점으로 한다.

※ 기타

1. 자율설계 경력개발학기(코스)지도는 주관부서에서 심의하여 통과된 지도 및 성과등급에 의해 산정한다.
2. 학생교육지도는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을 통해 시행한 교육지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table>
<tr><td>2-2</td><td>학생지도</td></tr>
<tr><td>세칙</td><td>
※ 정의
1. 학생상담은 동아리지도 및 행사를 제외한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에 입력한 개인 및 집단상담에 대해 평가한다.
2. 동아리지도는 주관부서 심의에 의해 등록된 동아리지도를 의미한다.

※ 점수산출방법
1. 학생상담 = 상담건수(집단상담은 1건으로 인정) X 2점
가) 최대 배점은 60점으로 한다.

2. 동아리지도 = 전공동아리 평가점수 + 일반동아리 평가점수 + 취업동아리 평가점수 + 창업동아리 평가점수 <개정 2023. 12. 14.>
가) 동아리지도 평가점수는 아래 평가등급에 준하여 산출한다.
<table>
<tr><th>등급</th><th>평가점수</th></tr>
<tr><td>1등급</td><td>60</td></tr>
<tr><td>2등급</td><td>40</td></tr>
<tr><td>3등급</td><td>20</td></tr>
</table>
나) 최대 배점은 60점으로 한다.

3. 학생지도의 최대 배점은 80점으로 한다.

※ 기타
1. 동아리지도는 정규회원 10명 이상 주관부서에 등록된 동아리를 의미한다. 단, 창업동아리의 지도는 정규회원 6명 이상 주관부서에 등록된 동아리를 의미한다. <개정 2023. 12. 14.>
2. 동아리지도는 최대 2개까지 인정한다. 단, 동일 목적을 가진 동아리의 경우 1개만 지도할 수 있다.
3. 동아리 복수지도의 경우 교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4. 동아리지도 평가는 주관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주관부서의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봉사활동 지도실적은 봉사 실적에서 인정한다)
</td></tr>
</table>

2-3 교원개인별 강의평가

세칙

※ 정의

교과목에 대한 교원별 강의평가 점수를 평가한다.

※ 점수산출방법

1. 강의평가 점수는 1·2학기 평균점수를 계산하여 아래 평가등급에 준하여 산출한다.

강의평가	평가점수
4.0 이상	60
3.9 이상	50
3.8 이상	40
3.7 이상	30
3.6 이상	20
3.5 이상	10
3.0 이상	5

2. 강의평가 응답률이 70% 미만인 교과목의 강의평가 점수는 아래의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응답률(%)	반영비율(%)
60%≦X<70%	70%
50%≦X<60%	50%
40%≦X<50%	30%
30%≦X<40%	10%
X<30%	0%

3. 최대 배점은 60점으로 한다.

※ 기타

1. 강의평가는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나, 강의평가 제외 교과목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2. 3인 이상 진행하는 공동강의의 경우 평가 결과는 개인별 점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연구년 등 공식적인 기타 사유로 1개 학기만 강의 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받은 학기 점수를 반영한다.
4. 국가재난사항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 점수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2-4	**기타수업운영(야간, 주말 수업 운영 등)** [제목개정 2023. 12. 14.]
세칙	**※ 정의** 야간·주말 수업 운영에 대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3. 12. 14.> **※ 점수산출방법** 1. 야간 수업 운영 = 1학기 점수 + 2학기 점수 가) 야간 수업 운영은 1시수 당 3점을 부여한다. 나) 최대 배점은 15점으로 한다. 2. 주말 수업 운영 = 1학기 점수 + 2학기 점수 가) 주말 수업 운영은 1시수 당 3점을 부여한다. 나) 최대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3. <삭제 2023. 12. 14.> 4. 기타수업운영의 최대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 기타** 1. 기타수업운영은 학점인정 수업에 한하며 주관부서의 자료를 활용한다. 2. <삭제 2023. 12. 14.> 3. 야간 및 주말 수업을 대면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점수 부여는 1/15로 나누어 산정한다.(단 야간 및 주말 수업을 온라인(LMS 탑재)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5	산학협력체결, 실습지도(시수 미인정)

세칙

※ 정의

1. 산학협력체결은 활동 실적이 있는 체결 건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실습지도(시수 미인정)는 정규 개설 교과목에 한하여 평가한다.

※ 점수산출방법

1. 산학협력체결 <개정 2023. 12. 14.>
   가) 산학협력체결: 다음의 2개 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점수를 부여한다.

항목	내용
1	산학협력체결[1)]
2	체결기관 산업체 방문(산학협력활동[2)]) 2회 이상(1년 최소 2회 방문, 체결 방문 포함)

[1)] 산학협력체결 기간은 2년 체결까지 인정하며, 주관부서에서 안내한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에서 체결을 선택한 경우 인정한다.

[2)] 산학협력활동은 취업 의뢰, 산업체 연수, 산업체 특강,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취업약정, 졸업생 취업자 면담(추수지도), 기타 산학협력활동 등을 말하며 결재 또는 주관부서에서 안내한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에서 기타 산학협력활동을 선택하고 입력한 활동에 대해 인정한다.

   나) 산학협력체결은 1개 기관당 10점을 부여한다.
   다) 최대 배점은 100점으로 한다.

2. 실습지도(시수 미인정) = 1개 기관 방문 건당 2점을 부여한다.
   가) 1일 1건만을 인정한다.
   나) 최대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3. 최대 배점은 100점으로 한다.

※ 기타

1. 산학협력체결은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체결기간은 2년까지 매년 인정한다.
   나) 공동으로 체결된 산학협력은 참여교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산학협력체결 산업체 방문은 실습지도를 제외한 모든 방문을 인정한다.
2. 시수 미인정 실습지도는 정규교과목에 개설된 실습교과목(교직 현장실습 포함) 지도를 위해 방문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2-6	산학협력교육과정 유치(계약학과 등 기타 신입생 유치)
세칙	**※ 정의** 계약학과(양성과정), 산업체위탁, 전공심화, 정원 외 입학, 재직자 교육과정(향상과정), 고교 위탁과정, 주문식 교육과정 등에 준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3. 12. 14.> **※ 점수산출방법** 1. 유치점수는 인원 당 2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3. 12. 14.> 2. 주문식 교육과정은 수강인원 당 2점을 부여한다. <신설 2023. 12. 14.> 3. 유치 교원이 2인 이상일 경우는 교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4. 최대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 기타** 1. 산학협력교육과정 유치 정의 외의, 기타 사항의 인정 여부는 관련 부서에서 판단한다.

2-7	캡스톤디자인(정규교과목개설), 산학공동프로젝트(비정규), 현장실습 운영

세칙

※ 정의

정규교과목으로 개설된 캡스톤디자인, 산학공동프로젝트(비정규), 연속 4주 이상 운영하는 현장실습에 대하여 평가한다.

※ 점수산출방법

1. 캡스톤디자인 = 1학기 점수 + 2학기 점수 <개정 2023. 12. 14.>

가) 다음의 4개 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점수를 부여한다.

항목	내용
1	정규교과목
2	교과목명에 캡스톤디자인 또는 종합설계를 부기하여 캡스톤디자인 여부가 명확함
3	시제(작)품 제작 등을 위한 실험실습비 집행
4	팀 과제로 1학기 이상 운영

나) 캡스톤디자인 수업 운영은 1시수 당 3점을 부여한다.

다) 융합 캡스톤디자인은 운영 교원 당 2점을 추가 부여한다.

라) 최대 배점은 15점으로 한다.

2. 산학공동프로젝트 <개정 2023. 12. 14.>

가) 다음의 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점수를 부여한다.

항목	내용
1	팀 과제로 운영
2	5회 이상 운영
3	산업체 인사 2회 이상 참여(지도, 자문 등) 필수

나) 팀은 최소 학생 5인 이상, 지도교수 1인 이상으로 한다.

다) 한 과제당 10점을 부여한다.

라) 최대 배점은 15점으로 한다.

3. 현장실습 운영

가) 현장실습 운영 점수는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로 평가한다.

1) 학생 1인당 4점을 부여한다.

2) 최대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4. 최대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 기타

1. 캡스톤디자인과 산학공동프로젝트는 수업을 진행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점수를 부여하며, 담당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교원 수로 나누어 평가한다.(융합으로 2개 이상의 학과가 참여한 경우 학과별 참여교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현장실습 운영은 결과 보고에 명시된 담당교수로 산정하며, 담당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교원 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3. 산학공동프로젝트는 과제를 진행한 담당교수에게 점수를 부여한다. 단, 창업동아리와 연계하여 운영한 산학공동프로젝트인 경우 불인정한다.

2-8	**창업지도 및 산업자문, 기술이전** [제목개정 2023. 12. 14.]

세칙

※ 정의

1. 교원 실험실 창업 및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 평가대상으로 한다.
2. 산업자문을 실시한 경우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4.>
3. 재학생 창업지도는 재학생 창업지도를 통해 사업자등록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4. 외부기관자문은 무보수로 공식적인 위촉장에 준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지속적 자문 활동을 평가한다. 단 일회성 활동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점수산출방법

1. 창업지도

평가내용	평가 최대 점수
사업자등록 완료 및 유지	10
직원 채용, 학생 현장실습 등 사업의 유지 및 운영	15
매출액 발생	20

2. 산업자문 <개정 2023. 12. 14.>

평가내용	평가 최대 점수
7일 미만 지도	20
7일 이상~14일 미만 지도	30
14일 이상 지도	40

3. 기술이전

가) 기술이전 수익금은 10만 원당 2점을 부여한다.

4. 외부기관자문

가) 외부기관자문은 기관 당 5점을 부여한다.

나) 최대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5. 최대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 기타

1. 관련 부서의 결재를 득하고 기술이전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이전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인정한다.
2. 산업자문은 관련부서의 기준에 준한다. <개정 2023. 12. 14.>
3. 외부기관의 자문은 정식 위촉장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학회 및 교수협의회의 보직 및 출제, 심사 등은 제외한다.
4. 위촉장에는 반드시 위촉 기간이 명시(평가 당해 연도 3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되어야 한다.

2-9	재정적 기여
세칙	**※ 정의** 장학금, 기부금, 기증품, 행사유치, 외국대학(학생) 대상 단기 교육과정, 외부지원금 등 직·간접적으로 대학의 재정에 기여한 경우 평가한다. **※ 점수산출방법** 1. 재정적 기여 점수 가) 재정적 기여 점수는 10만 원당 2점을 부여한다. 단, 기증품에 대한 지원 물품은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2. 최대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 기타** 1. 학과에서 공동 유치한 경우 교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내부 구성원이 기부한 경우도 인정한다. 3. 해당 기관의 공문에 명시된 금액을 인정한다.

2-10	대내외보고서, 산학협력수주활동

세칙

※ 정의

1. 대학평가, 대학의 정책유도 등을 위한 대내외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산학협력수주활동을 위한 보고서 작성과 활동에 대하여 평가한다.

※ 점수산출방법

1. 대내외보고서

등급	평가내용	평가점수
1등급	기관인증평가보고서, 특성화 사업계획서,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200
2등급	1등급 제외 대학 평가관련보고서	50
3등급	교원학습연구모형보고서(교수학습경진대회출품작), 교내외 정책연구보고서	40
4등급	외부지원사업계획서	10

2. 산학협력수주활동(외부지원사업 수탁) <개정 2023. 12. 14.>
   가) 단, 대내외보고서의 4등급에만 해당한다.
   나) 간접비(운영지원비) 10만 원당 2점 부여한다.
   다) 최대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3. 최대 배점은 80점으로 한다.

※ 기타

1. 공동연구의 경우 2인은 70%, 3인은 50%, 4인 이상은 30%, 9인 이상은 교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단, 1등급 보고서의 경우 1인 최소 50점을 부여한다.)
2. 외부사업계획서 제출 후 미선정(미인증)된 경우 배점의 50%를 인정한다.
3. 연속 사업의 경우, 최초 사업계획서만 인정하며, 2년차부터는 당해 연도 간접비에 한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23. 12. 14.>
4. 동일한 기관 및 동일 사업의 경우 최초 사업계획서만 인정한다.(사업결과보고서 미인정)
5. 교원학습연구모형보고서는 외부 출품작에 한하여 40점을 인정하나, 수상 시에는 수상점수가 부여되므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6. 연구소 및 위수탁기관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11 학술논문

세칙

※ 정의

전공과 관련된 학술논문에 대하여 평가하며, 공연, 전시, 연주 활동을 포함한다.

※ 점수산출방법

1. 학술논문 점수는 아래 평가등급에 준하여 산출한다.

등급	평가내용	평가점수
1등급	국제 저명학술지, 게재논문	80
2등급	국내 저명학술지, 국외 학술지 게재논문	60
3등급	국내/외 일반 학술지	40
4등급	기타 논문집 및 학술지 게재논문	10

가) 동일한 연구실적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나) 공동연구의 경우 2인은 70%, 3인은 50%, 4인 이상은 30%, 9인 이상은 교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학술논문, 공연, 전시, 연주 활동을 포함하여 최대 배점은 100점으로 한다.

※ 기타

1. 국제 저명학술지는 Science Citation Index(SCI),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SCIE),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A&H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SSCI) 등에 수록된 학술지를 말하며, 이에 준하는 기타 학술지의 경우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판정한다.
2. 국내 저명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회지를 말하며, 국외 학술지는 ISSN으로 등록된 G7국가(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전문학술지를 의미한다.
3. 2등급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및 1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국외 학술지로,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친 학술지를 의미한다.
4. 3등급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 및 등재후보 외의 논문을 의미한다.
5.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별쇄본 또는 최종본이 업적평가 심의기간 동안 발간되지 않을 경우 차기년도에 인정한다.

예능계 연구실적물

구분	공연		전시		연주	
	평가기준	배점	평가기준	배점	평가기준	배점
1등급	국제 저명 공연	80	국제 저명 전시	80	국제 저명 연주, 지휘, 작곡	80
2등급	개인 발표회	60	개인전	60	개인 연주, 지휘, 작곡	60
3등급	2~3인전	40	2~3인전	40	2~3인 연주	40
4등급	단체공연	10	단체전시	10	단체연주	10
평가 요령	1. 공연분야란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퍼포먼스를 의미한다. 2. 국제 저명 공연이란 비엔나, 아비뇽 페스티발 등에 준하는 초청 공연을 말한다. 3. 평가등급은 연출, 안무, 감독을 기준으로 하며, 출연 시에는 각 등급의 기본 점수에서 80%를 인정한다. 단, 주연은 100% 인정한다. 4. 스탭인 경우 등급별 30%를 인정한다. 5. 동일한 프로그램의 경우 1년 경과 후 50% 인정하며 3년 경과 후에는 100% 인정한다.		1. 전시분야란 조형예술에 관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2. 국제 저명 전시란 베니스 등에 준하는 전시를 말한다. 3. 전시는 공인된 장소와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한하여 인정한다. 4. 인터넷 갤러리의 경우 해당 평점의 1/2 인정한다. 5. 동일한 작품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1. 연주분야란 연주, 작곡, 지휘 등을 의미한다. 2. 국제 저명 행사란 바그너음악제에 준하는 국제 여름, 겨울 음악제 연주회를 말한다. 3. 오케스트라 협연 중 기악솔로는 전 프로그램으로 인정한다. 단, 2~3인이 연주하는 경우 70%를 인정한다. 4. 반주와 편곡은 각 등급에서 50%를 인정한다. 5. 앙상블 공연인 경우 3등급으로 인정한다. 단, 전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50%만 인정한다. 6. 편곡과 프로듀싱은 작곡의 50%로 인정한다. 7. 작곡은 연주로 실연한 경우와 음반으로 제작한 경우를 말한다. 8. 작곡은 영화, 광고, 게임 등 영상 관련한 작곡은 영상의 길이가 30초 이상 5분 미만은 인정환산율의 15%, 5분 이상 10분 미만 30%, 10분 이상 20분 미만 50%, 20분 이상 70%, 40분 이상은 100%를 인정한다. 9. 동일한 프로그램의 경우 1년 경과 후 50% 인정하며 3년 경과 후에는 100% 인정한다.(단, 음반의 경우는 제외)	
공통 사항	1. 각 분야별 연구는 전문 시설(또는 공인 기관 주최)에서의 활동을 의미한다. 2. 학술 목적의 공연 및 전시, 연주를 평가한다. 3. 평가물은 교원의 전공이나 교육영역과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 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내·외 전문가에게 평가 의뢰 후 결과를 반영한다. 4.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초청 공연·전시·연주의 경우 주관단체의 공식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국제'란 참가국이 5개국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단, 국내에서 국제대회가 열릴 경우 제외한다.) 6. 1등급인 경우 본 공연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7. 오케스트라/뮤지컬/오페라 등은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4등급을 부여한다. 8. 학교 또는 학과 주관 행사 및 기타 행사성의 경우, 개인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2-12	**저서 및 사이버콘텐츠, 학습공동체(학습조직)** [제목개정 2023. 12. 14.]

세칙

※ 정의

ISBN에 등록된 저서 및 사이버콘텐츠에 대하여 평가한다.

※ 점수산출방법

1. 저서 및 사이버콘텐츠 점수는 아래 평가등급에 준하여 산출한다.

등급	평가내용	평가점수
1등급	전공저서, 사이버콘텐츠	60
2등급	번역서, 교과서(초 · 중 · 고등학교)	40
3등급	수험서 및 편저 등 기타 저서	20

가) 동일한 연구실적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나) 공동연구의 경우 2인은 70%, 3인은 50%, 4인 이상은 30%, 9인 이상은 교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개정판은 1차 개정판에 한하여 각 등급의 50%를 인정한다.

2. 학습공동체(학습조직) <개정 2023. 12. 14.>

가) 학습공동체(학습조직) 평가는 아래 평가등급에 준하여 산출한다.

등급	평가점수
1등급	10
2등급	5

나) 최대 배점은 25점으로 한다.

3. 최대 배점은 60점으로 한다.

※ 기타

1. 연속된 저서(상 · 하권, 1 · 2권 등)는 각 권으로 인정하되, ISBN 일련번호가 동일한 것은 1권으로 인정한다.
2. 번역서란 한국어나 외국어로 번역 출판한 서적을 말한다.
3. 개정판의 경우 개정 내용이 30% 이상인 경우 인정하며, 개정된 부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학습공동체(학습조직)는 주관부서에서 결과보고서를 평가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개정 2023. 12. 14.>

2-13	특허

세칙

※ 정의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 점수산출방법

1. 특허 점수는 아래 평가등급에 준하여 산출한다.

등급	평가내용	평가점수
1등급	국제 특허	60
2등급	국내 특허	50
3등급	실용신안	40
4등급	디자인(의장)특허	30

2. 최대 배점은 60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4.>

※ 기타

1. 공동연구의 경우 2인은 70%, 3인은 50%, 4인 이상은 30%, 9인 이상은 참여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23. 12. 14.>
2. 동일한 내용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상위점수의 1건만 인정한다.

2-14 대외수상

세칙

※ 정의

교수학습경진대회 및 기타 대외수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3. 12. 14.>

※ 점수산출방법

1. 교수학습경진대회는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대하여 아래 평가등급에 준하여 산출한다.

등급	평가내용	평가점수
1등급	교육부장관상	60
2등급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상	50
3등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상	40

2. 대외수상 점수는 아래 평가등급에 준하여 산출한다.

등급	평가내용	평가점수
1등급	대통령상 표창	50
2등급	국무총리상 표창	40
3등급	장관, 차관상 수상 이상, 국제학회 및 단체상	30
4등급	청장 이상 및 지자체장수상	20
5등급	공공기관장상	10

3. 단체상의 경우, 등급별 평가점수를 수상인원으로 교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4. 최대 배점은 60점으로 한다.

※ 기타

1. 대외수상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3. 12. 14.>
   가) 국제학회 및 단체상 : 외국의 저명한 학회 또는 단체, 국제기구 등이 학술 및 교육 관련 업적을 인정하여 수여한 상
   나) 청장 이상 및 지자체장수상 : 학술 및 교육, 제반 활동 결과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포상 및 훈장
2. 공로 및 표창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단, 국가 및 공공기관의 공로 및 표창은 인정한다.
   (보직수행으로 인한 표창도 인정한다.)

2-15	위원회, TFT활동

세칙

※ 정의

교내 위원회, TFT활동은 위원장(팀장)과 위원(팀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한 실적을 평가한다.
<개정 2023. 12. 14.>

※ 점수산출방법

1. 위원회 및 TFT활동 <개정 2023. 12. 14.>

가) 위원장 = (위원회 평가 X 재직 개월 수) / 12 X 10

나) 위원 = (위원회 평가 X 위원에 대한 위원장의 평가 X 재직 개월 수) / 12

1) 위원 평가는 아래 평가등급에 준하여 산출한다.

등급	평가점수
1등급	6
2등급	5
3등급	4

2) 위원회 평가는 아래 평가등급에 준하여 산출한다.

등급	평가점수
1등급	6
2등급	5
3등급	4

2. 최대 배점은 100점으로 한다.

※ 기타

1.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평가는 기획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2. 위원회 활동 실적이 2회 이상인 경우에만 점수를 부여한다.
3. TFT 평가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장 등이 평가한다.
4. 대내외보고서로 점수가 인정된 TFT활동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 12. 14.>

2-16	학과장 평가

세칙

※ 정의

평가대상 기간 중 학과장을 1개월 이상 수행한 교원에 대하여 평가한다.

※ 점수산출방법

1. 학과장 = (학과장 활동성과 평가점수 X 재직 개월 수) / 12

가) 학과장 활동성과 평가점수는 아래 평가등급에 준하여 산출한다.

등급	누적비율	평가점수
1등급	0~10%	80
2등급	11~70%	75
3등급	71~90%	70
4등급	91~100%	65

나) 학과장 활동성과 평가는 학과평가영역 점수를 활용한다.

2. 최대 배점은 80점으로 한다.

※ 기타

1. <삭제 2023. 12. 14.>
2. 2개 학과를 운영하는 경우 운영 학과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14.>

2-17	봉사, 홍보, 언론 활동

세칙

※ 정의

1. 봉사 활동은 무보수, 공익성 성격을 가지고 대학 사회봉사단(학과 주관 포함)이 주관한 공식적인 활동에 대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3. 12. 14.>
2. 홍보 활동은 학교 홍보 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교원이 참여한 활동으로 입시홍보, 진로특강, 입시상담 등 대학 주관부서 계획서에 의해 시행된 활동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언론 활동은 언론매체에 논평, 서평을 기고하거나 방송매체 출연 등으로 참여한 경우로 수원여자대학교가 명시된 활동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점수산출방법

1. 봉사, 홍보, 언론 활동 점수 <개정 2023. 12. 14.>

가) 봉사, 홍보 활동은 30분 당 1점을 부여한다.

나) 언론 활동 점수는 아래 평가등급에 준하여 산출한다.

등급	평가 내용	평가점수
1등급	중앙일간지, 중앙방송의 언론 활동	10
2등급	1급을 제외한 언론 활동	5

2. 최대 배점은 70점으로 한다.

※ 기타

1. 봉사 활동은 사회봉사단(학과 주관 포함)이 주관한 공식적 봉사로 사회봉사결과보고서 결재가 완료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개인봉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14.>
2. 홍보 및 언론 활동은 홍보 및 언론활동 결과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MOU 체결, 학과 홍보 등 학과의 대표자로 기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18	연구소장 및 위수탁기관장 활동

세칙

※ 정의

연구소장(센터장) 및 위수탁기관의 장의 실적에 대한 평가로 1개월 이상 활동한 실적과 대학 기여도를 평가한다. <개정 2023. 12. 14.>

※ 점수산출방법

1. 연구소장(센터장) 및 위수탁기관장 = (평가등급 점수 / 12개월) X 재직 개월 수 <개정 2023. 12. 14.>

등급	평가내용	평가점수
1등급	90점 이상	10
2등급	80~89점	8
3등급	70~79점	5
4등급	69점 이하	1

가) 최대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2. 참여교원 평가

등급	평가내용	평가점수
1등급	90점 이상	4
2등급	80~89점	3
3등급	70~79점	2
4등급	69점 이하	1

가) 최대 배점은 5점으로 한다.

3. 전체 최대 배점은 25점으로 한다.

※ 기타

1. 연구소장 및 위수탁기관장 활동은 산학협력위원회에서 평가한다.
2. 연구소 및 위수탁기관 참여교원은 연구소장이 평가한다. 단, 법인소속 위수탁기관장의 활동은 총장이 평가한다.(단, 교원업적평가 제외대상 교원은 평가하지 않는다.)
3. 연구소장 및 위수탁기관장 평가는 시행하되 외부 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업적점수에 반영한다.

2-19	기타 실적관리
세칙	**※ 정의** 주관부서에서 주관하는 학내 교육 프로그램 및 전체 교수회의 참여에 대하여 평가한다. **※ 점수산출방법** 1. 학내 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정 2023. 12. 14.> 가) 회당 1점을 부여한다. 2. 전체 교수회의 참여 가) 회당 1점을 부여한다. 3. 15주 수업 운영 준수 여부 가) 미준수 시 건당 1점을 감점한다. 4. 강의계획서 입력 일정 준수 여부 가) 미준수 시 건당 1점을 감점한다. 5. 최대 배점은 10점으로 한다. **※ 기타** 1. 교육 프로그램은 필수 교육, 온라인 교육(수료증 제출) 등 대학 주관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2. 전체 교수회의의 경우 대학 공식적인 업무로 사전 결재를 득하고 불참한 경우에는 참여로 간주한다. (개인적 사유는 미인정) <개정 2023. 12. 14.> 3. 15주 수업 운영 준수는 현장점검 시 미준수로 확인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4. 강의계획서 입력 일정 준수(강의계획서 작성 안내 기간)는 강의계획서 입력 일정 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강의계획서 입력을 미준수한 경우에 적용한다.(한 항목이라도 미입력 시 미준수로 적용함) <개정 2023. 12. 14.>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